



남양주시복지재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후원금 및 후원물품 배분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사회복지단체에서 배분받은 후원물품에 대한 부절적인 상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기존에 후원금·품 배분 목적과 복지재단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단체에 대해 '후원금·품 배분 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이에, 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원금·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앞으로 재단에서는 유사한 사건 발생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끝.

<인수확인증 서식 추가내용 참고>

1. 상기 물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수기관은 지원 현물의 매도 및 제삼자에게 전매, 교환(바자회 등으로 재판매, 기념품 제공 포함)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 현물의 부정 사용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수기관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추가자료(배분 대상자 명부, 사진 등)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인수기관은 상기 의무사항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양주시복지재단의 배분규정에 의거한 제재 (취소 및 환수 등)
 - 남양주시복지재단의 환수요구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수신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내 사회복지단체, 16개 읍면동 협의체

전결 07/11

대리 **김은혜** 부장 **정혜령** 복지실장 **김선미**

협조자

시행 남양주시복지재단-3313 (2024.7.11.) 접수

우 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1층 /

전화 031-524-9847 전송 0303-0955-9834 / nyj-welfare@daum.net / 공개